

「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

2. 찬 성 자: 김민성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·창조력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문화예술교육 지원(안 제5조)
- 지역거점 구축(안 제6조)
- 전문인력 양성(안 제7조)
- 지도·감독(안 제8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, 제3조, 제5조의2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규칙 등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, 경북문화재단과 구미 문화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육 진흥 사업과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, 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구미시 내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및 문화예술 전공 유희 인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확보하고 교육 활동 실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